

상호 업무 협력 협약서

대구대학교 차세대 반도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'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'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 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'차세대 반도체 분야 핵심 인재 양성'을 위한 전문교육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취업 활성화와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약의 범위) 협약 기관은 협약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노력하며,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진행하기로 한다.

1. 차세대 반도체 분야 신기술 중심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산·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2. 반도체 분야의 고수준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훈련 제공
3. 채용박람회, 워크숍, 세미나 등 취업역량 지원 행사 공동 수행 및 상호 지원
4. 정보교류, 연구 협력, 홍보 지원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지원
5. 기타 협약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

제3조(협약의 이행)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하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,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세부 사항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 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실무자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비밀유지) 협약 기관은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협약 기간)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다만, 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약의 종료 또는 변경에 대해 서면 통보가 없는 한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한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①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보하고 상호 합의 후 변경한다.

② 협약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본 협약이 체결된 후 각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상호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11월 1일

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단

POLARIS



대한상공회의소
서울기술교육센터

사업단장 김경기

김경기

센터장 김연선

김연선